『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정관

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

# 『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 정 관

제정 2007. 2. 23. 정관 제1호 개정 2008. 1. 8. 정관 제2호 개정 2008. 3. 17. 정관 제3호 개정 2012. 2. 28. 정관 제4호 개정 2012.10. 26. 정관 제5호 개정 2015. 2. 6. 정관 제6호 개정 2016. 7. 25. 정관 제7호 제8호 개정 2018. 3. 19. 정관 개정 2019. 4. 4. 정관 제9호 개정 2021. 8. 2. 정관 제10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재단은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 및 환경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매립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사무소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 지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 1. 매립지 주변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2. 매립지 주변지역주민 및 환경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복리증진사업
  - 3. 매립지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주민협력활동 지원
  - 4. 신재생에너지 관련 작물의 재배·활용 및 생태탐방 사업
  - 5. 매립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 6. 기타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 사업

- ②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재단은 제2항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출자를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 다. <개정 2021. 8. 2>

####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이사장 포함)
- 3. 감사 2인 이하
- ②모든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임직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으로 한다.<개정 2012. 2. 28>
- 제6조(이사) ①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개정 2015. 2. 6>
    -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본부장<개정 2012. 2. 28>, <개정 2019. 4. 4>
- 제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25>
- 제8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5. 「민법」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2조(이사장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제6조 제2항 2호 규정의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4. 4>
  - ②제1항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장 이 사 회

- 제13조(이사회 구성)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재단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직제, 회계, 인사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
  - 5.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 1. 8>
  -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④이사장은 제2항의 임시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6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 등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19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과 회계

- 제20조(재산의 구분)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재산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1. 8>
- 제21조(재산의 관리) ①제20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재단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2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2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24조(회계의 구분) ①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 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 ③제2항에 따라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령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2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재단은 당해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매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8>
  - ②재단은 당해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7조(차입금) 재단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8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29조(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임원등에 재산 대여금지) ①재단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재단의 설립발기인
  - 2. 재단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재단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5장 조 직

- 제31조(사무국) ①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2조(직원의 임면 등) ①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사무국 직원의 급여와 복무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33조(자문위원)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장 보 칙

-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청산인) 재단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 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1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 이전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재단 설립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비고
이사장	윤서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 사	전병성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1-13	
이 사	정홍식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1735	
이 사	이기호	인천시 서구 오류동 675	
이 사	윤석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08	
이 사	정종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서해@	
이 사	최상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9-1	
감 사	조성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2007년 2월 12일

## 「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위	원 장		윤	서	성 (인)
위	원		전	병	성 (인)
위	원		정	홍	식 (인)
위	원		(ه	기	호 (인)

위 원 위 원 정 종 준 (인) 위 원 최 상 일 (인)

위 원 조 성 오 (인)

#### 부 칙 <개정 2008. 1.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은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식 <개정 2008. 3. 17>

이 정관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식 <개정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0. 2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6. 7. 2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8. 3. 1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목록 1]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년 2월 12일 설립)

재 산 명	l 산 명     수 량 - 평 가 액(원)		비고
현 금		1,000,000	
합계		1,000,000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1,000,000	
중) 기			1 000 000	
합 계			1,000,000	

## [별지목록 2] <개정 2008. 1. 8>

# 제1차 개정 기본재산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1월 8일 개정)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고
현 금		171,000,000	
합 계		171,000,000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171,000,000		
합 계				171,000,000		

## [별지목록 3] <개정 2008. 3. 17 >

# 제2차 개정 기본재산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3월 17일 개정)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고
현 금		640,700,000	
합계		640,700,000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640,700,000		
합 계				640,700,000		

# [별지목록 4] <개정 2016. 7. 25 >

# 현재 기본재산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16년 7월 25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고
현 금		424,116,720	
합 계		424,116,720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424,116,720		
합 계				424,116,720		

## [별지목록 5] <개정 2018. 3. 19 >

# 현재 기본재산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18년 3월 19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640,700,000	
합계		640,700,000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640,700,000		
합 계				640,700,000		